

등록번호	일자리경제과-11594
등록일자	2014. 12. 8.
결재일자	2014. 12. 8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생활경제팀장	일자리경제과장	경제재정국장	부구청장	구청장
이정인	정현국	오경찬	김종두	조인동	12/08 문석진
협 조	정책기획담당관	임근래			
	규제개혁팀장	김정현			
	주무관	김오녀			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계획

추진근거	대내(외) 협력 현황			사업비
	기관·부서·단체명	협의내용	협의결과	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	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여성가족과	규제심사·위원회협의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	해당없음 개선 의견 반영 원안동의	

서 대 문 구
일자리경제과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계획

『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』에 의한 ‘기금의 일몰제’를 적용하고 ‘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’의 구성 및 운영의 보완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조례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.

I 개정근거
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, 같은법 시행령 제3조
 -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, 같은법 시행령 제7조
 -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

II 주요개정내용

- 『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』 제4조에 의한 기금의 일몰제 적용 신설
(안 제2조의2)
- 위원회 제명 변경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 및 보완
(안 제6조)
- 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 근거 마련(안 제6조의2, 안 제6조의3)

Ⅲ 향후 계획

- 입법예고 : 2014. 12. 08~12. 29(20일간)
-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 : 2015. 01월중
- 구의회 조례안 심의·의결 : 2015. 01월중
- 조례 공포·시행 : 2015. 01월중

붙임 : 1.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
조례안 1부.
2. 입법예고문 1부. 끝.